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서울청정 맑음!
서울교육 밝음!

2026년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2026. 8.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1. 감사배경 및 목적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 규정」 제2조
- 2026년도 자체감사 계획(감사관-20883, 2025. 12. 31.)
- 기관 운영 업무 전반에 대한 적법·타당성 등 점검
- 각종 문제점에 대한 시정·개선 대안 제시로 기관 운영의 건전성 확보

2. 감사 대상기관 및 범위

- 감사 대상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
- 감사범위: 2023. 1. 1. ~ 2026. 5. 31. 기간 동안 처리한 업무 전반

3. 감사 중점

- 교육프로그램 및 연수 운영 실태
- 기관 세출예산 집행 적정성
- 각종 계약에 대한 운영 실태
- 직원 인사 및 채용 적정성
- 복무관리, 급여지급 적정 여부 등
- 민원처리 현황
- 감사처분 시정 요구사항 이행 여부 등

4.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2026. 6. 23.(화) ~ 6. 26.(금) [4일간]
- 감사인원: 총 7명

5. 처분사항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참고

일련 번호
1

서울특별시교육청

기 관 주 의

제 목 교원 연수 위탁운영 계약 및 정산업무 부적정
 기 관 명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
 내 용

1. 업무 개요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에서는 교원의 디지털 기반 수업·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교육부로부터 교부 받은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금1,917,000천원을 재원으로 「지방계약법」 등에 의한 위탁용역 계약을 통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교원연수 운영’ 사업을 추진하였다.

2. 교원 연수 위탁운영 계약 부적정

가. 관계 법규 및 판단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고를 통해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및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용역·물품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때에는 지정정보 처리장치를 이용한 공고를 통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2천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때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사회적기업 등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까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에서는 2024년 교육부로부터 ‘디지털교육 혁신 특별교부금’ 금1,300,000천원을 교부받아 ‘2024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교원연수 운영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사업의 추정가격에 따라 일반경쟁 입찰 또는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진행해야 함에도, [표 1]과 같이 연수목적, 추진시기 및 계약내용 등이 유사한 연수과정을 3건으로 분할하여 각각 1인 수의계약 방식으로 부적정하게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표 1] '2024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교원연수 운영사업' 위탁계약 부적정 내역

(단위: 천원)

연번	연도	예산구분 (교부시기,금액)	계약명	계약업체	계약일	연수일	계약금액	계약 방법		사업 부서
								적정	부적정	
1	2024	2024 디지털 교육혁신 특별교부금 (‘24. 1월, 1,300,000천원)	초등 AI 융합수업 직무연수 운영 용역	△△△	7. 23.	8.5~8.6	21,780	일반경쟁 입찰 또는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1인건적 수의계약	교육 연수부
2			AI로 나만의 맞춤형 수업 설계하기 직무연수 운영 용역	☆☆☆	7. 24.	7.31~8.1. 10.7~11. (총 6일)	54,875		1인건적 수의계약	
3			2024 정보 역량강화(파이썬, 데이터과학, 인공지능) 직무연수 운영 용역	♣♣♣	7. 25.	8.26~8.31. 9.23~9.28 (총 12일)	29,874		1인건적 수의계약	
합 계							106,529			

※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 제출자료 및 업무관리시스템(K-에듀파인) 자료 재구성

3. 교원 연수 위탁운영 산출내역서 작성 및 정산업무 부적정

가. 관계 법규 및 판단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해당 목적물의 규격서·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2절 계약의 체결에 따르면 계약문서¹⁾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계약문서 중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과업내용에 따른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추정가격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항목별 금액 구성 및 산출근거를 과업내용서 및 추정가격 산정에 적용한 산출근거 등과 비교하여 그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참여인원 등에 따라 소요금액이 변동되는 식비 등 경비를 사후정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로 계약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계약서, 과업내용서 등에 정산항목, 정산기준·방법 및 증빙서류를 명확히 정하고, 사업 완료 후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과업이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와 정산 대상 경비의 집행내역을 증빙서류 등을 통해 확인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확히 정산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에서는 2024년 및 2025년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고위공직자 직무연수’ 위탁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표 2]와 같이 업체로부터 비목별 세부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산출내역서를 제출²⁾받았다. 또한 산출내역서에는 산출식에 따른 실제 계산 금액과 기재된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등 산출내역에 오류³⁾가 있었으며, 제안요청서에는 사업 완료 후 정산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지출 시에는 계약 당시 산출내역서와 다른 항목 및 금액으로 정산 내역을 제출 받았고 영수증도 미첨부하였다. 그 결과 계약금액 산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계약문서인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이 적정하게 정산·지급되었는지 여부 또한 확인하기 어렵게 한 사실이 있다.

[표 2]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고위공직자 직무연수’ 계약 및 정산 부적정 내역

(단위: 천원)

연번	연도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자	계약일	계약금액	지출금액	산출내역서 부적정 내역			
								산출근거 작성 여부	산출근거 및 금액 일치 여부	항목별 정산 적정 여부	영수증 첨부여부
1	2024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고위공직자	제한경쟁 (협상에의한 계약)	☆☆☆	6. 28.	394,598	394,598	X	X	X	X
2	2025	직무연수 위탁용역	1인 수의 ⁴⁾		5. 21.	201,637	201,637	X	X	X	X
합 계						596,235	596,235				

※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 제출자료 및 업무관리시스템(K-에듀파인) 자료 재구성

2) (2024) ex 워크숍 운영비 내역을 인원수에 따른 항공료, 식비, 숙박비 등 세부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80,800,000원 총 금액만 명시함
 (2025) ex 워크숍 운영비 내역을 인원수에 따른 항공료, 식비, 숙박비 등 세부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67,500,000원 총 금액만 명시함
 3) (2024) 노무비 산출근거는 1,000,000원*51시간*2기(=102,000,000원)로 되어 있으나 금액은 132,670,000원으로 명시함
 (2025) 명시된 경비의 합계(181,833,300원)와 실제 합계(186,833,300원)가 불일치함

또한, 2024년 및 2025년 일부 교원 연수 위탁운영 용역 계약 경우 과업내용서상 계획된 참여인원을 기준으로 식비 등 실비성 경비 항목의 산출내역을 작성하였음에도, 참여인원 증감에 따른 정산 항목 및 계약금액 조정 등을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에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다.⁵⁾ 이에 따라 [표 3]과 같이 실제 연수 참여인원이 계획 인원과 다르게 운영되었음에도 산출내역서상 1인당 단가를 적용한 산출 내역 항목에 대해 정산하지 않은 채 계약금액대로 지급하여 정산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3] 디지털교육혁신 연수 정산 부적정 내역

(단위: 천원)

연도	건명	계약 일자	계약 상대자	계약 금액	지출 금액	항목 ⁶⁾	단가 (A)	횟수 (B)	계획 인원	참여 인원 (C)	정당금액 (D=A*B*C)	지출 금액 (E)	차액 (F=E-D)
2024	시로 나만의 맞춤형 수업 설계하기 직무연수 운영 용역 계약	7. 24.	▲▲▲	54,875	54,875	식비	10	3	160	157	4,710	4,800	90
						다과비	5	3	160	157	2,355	2,400	45
						실습 재료비	24	1	160	157	3,768	3,840	72
						임차비	30	1	160	157	4,710	4,800	90
						소 계						15,543	15,840
2025	2025 수학 AIDT 활용 직무연수 운영 용역 계약	8. 20.	◇◇◇	55,000	55,000	다과비	12	1	240	204	2,448	2,880	432
						식사비	15	1	120	102	1,530	1,800	270
						구독료	40	1	140	122	4,880	5,600	720
						교재비	12	1	120	102	1,224	1,440	216
						재료비	50	1	120	102	5,100	6,000	900
						소 계						15,182	17,720
합 계				109,875	109,875					30,725	33,560	2,835	

※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 제출자료 재구성

4)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2항 한시적특례에 따라 입찰자 1인뿐인 경우 수의계약 가능

5) 2024년 건: 과업내용서에 참여인원 증감 등에 따른 정산 관련 내용 없음

2025년 건: 과업내용서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연수 학급 수 및 연수생이 예정보다 감소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변경 계약을 체결해야 함’ 이라고 명시함

6) 산출금액이 1인당 단가로 설정된 항목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장은

- ① 앞으로 교원 연수 등 위탁용역 계약을 추진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업의 목적·재원·추진시기 및 과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추정가격에 적합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② 앞으로 교원 연수 등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비목별 단가·수량·산출식 및 산출근거의 적정성과 계산금액의 일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참여인원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식비 등 실비성 경비에 대해서는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에 정산대상·기준·방법 및 증빙서류를 명확히 정하기 바라며, 사업 완료 후에는 산출내역서와 실제 참여인원 및 지출 증빙자료를 대조하여 계약대금을 정확히 정산·지급하는 등 용역계약 및 정산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③ 이 건 관련하여 “기관주의” 처분합니다.

일련 번호
2

서울특별시교육청

기 관 주 의

제 목 세출예산 편성 및 지출 업무 부적정

기 관 명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

내 용

1. 업무 개요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에서는 교특회계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기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고 있다.

2. 원가통계비목 집행 부적정

가. 관계 법규 및 판단 기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편성·집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및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서울특별시교육청, 매년 발행)에 따라 사업 내용에 맞게 세출 예산 과목을 구분하고 정당한 원가통계비목을 설정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지출 성격에 맞는 예산과목을 선택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또한, 위 지침에 따르면 원가통계비목 중 교구용기기취득비는 교육과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어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취득비이다. 급량비는 공무원에게 급여하는 식사 및 조리 관련 제반 비용이며 수련원, 연수원 등에서 학생(연수생)에게 급여하는 식재료비, 부대경비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강사수당은 교육훈련, 직장(자체)교육을 실시하고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원고료·실비지급 경비이며 기타운영수당은 그 외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뜻한다. 일반수용비는 사무용품, 각종 소모품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 구입에 대한 비용이며 사업추진경비는 주요 행사, 각종시책사업 등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행사·접대성 경비로 명시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에서는 2023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집행하면서 [표 1], [표 2] 및 [별표] “2023~2026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원가통계비목 설정 소홀 세부 내역” 과 같이 교구용기기취득비를 기타 실험장비취득비로, 급량비를 기타교육운영비로 집행하거나 기타운영수당이나 강사수당을 각종수수료로 집행하는 등 해당 지출 내역의 성격에 맞지 않는 원가 통계비목으로 총 159건, 금215,223,040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표 1] 교육비특별회계 원가통계비목 설정 부적정 내역(유형별)

(단위: 건, 천원)

유형	지출 건명	지출 성격	원가통계비목		건수	금액
			정당과목	착오과목		
①	2024 디지털기반 교원연수 기자재(노트북) 구매 외 8건	교구용기기	교구용기기 취득비	기타실험장비 취득비	9	144,056
②	2023년 4월 급식 식재료비(교특) 지급 외 26건	학생(연수생) 급식비	급량비	기타교육운영비	27	23,982
③	「2023 과학전시관 미래형 영재교육 교육과정」 개발위원 각종수당 지급 외 7건	검토수당	기타운영수당	각종수수료	8	17,684
④	2023 과학전시관 동부분관 영재교육원 3월 강사수당 지급 외 56건	강사수당	강사수당	각종수수료	57	17,408

유형	지출 건명	지출 성격	원가통계비목		건수	금액
			정당과목	착오과목		
⑤	동부분관 시설관리 소모품(접촉기 외 8종) 구입비 지출 외 50건	소모품성 경비	일반수용비	재료비	51	11,673
⑥	(행정지원과)기관 방문용 다과비 지출 외 6건	다과비	사업추진경비	일반수용비	7	420
합 계					159	215,223

※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 제출자료 및 업무관리시스템(K-에듀파인) 자료 재구성

[표 2] 교육비특별회계 원가통계비목 설정 부적정 내역(회계연도별)

(단위: 건, 천원)

회계 연도	유형별 건수 및 집행액												합계	
	①		②		③		⑤		⑤		⑥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3	1	12,263	8	9,111	4	13,928	19	5,034	23	4,949	-	-	55	45,285
2024	4	104,280	10	6,782	3	3,216	21	6,874	26	6,600	-	-	64	127,752
2025	2	2,786	8	6,234	1	540	16	3,800	-	-	7	420	34	13,780
2026	2	24,727	1	1,855	-	-	1	1,700	2	124	-	-	6	28,406
합 계	9	144,056	27	23,982	8	17,684	57	17,408	51	11,673	7	420	159	215,223

※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 제출자료 및 업무관리시스템(K-에듀파인) 자료 재구성

3.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 시 명단 미첨부

가. 관계 법규 및 판단 기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교육부 예규)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 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지급 기준을 준수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또한, 건당 50만원 이상을 사용할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에서는 2023년도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표 3]과 같이 건당 50만원 이상의 협의회 총 3건, 금1,914,000원에 대해 참석자 명단을 첨부하지 않았다.

[표 3] 2023년도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시 명단 미첨부 내역

(단위: 원)

연번	연도	결의일자	건명	건당 50만원 이상 집행금액	명단 첨부 여부
1	2023	2023.02.21.	2023 과학전시관 동부분관 강사 워크숍 협의회비 지출	714,000	X
2	2023	2023.11.13.	제65회 서울과학전람회 예선대회 중학부 2차 면담 심사위원 평가 협의회비 지출	600,000	X
3	2023	2023.11.13.	제65회 서울과학전람회 예선대회 고교부 2차 면담 심사위원 평가 협의회비 지출	600,000	X
합계				1,914,000	

※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 제출자료 및 업무관리시스템(K-에듀파인) 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장은

- ① 앞으로는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예산과목을 정확히 구분하여 편성 및 집행하고,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 시 참석자 명단을 첨부하여 예산의 적정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② 이 건 관련하여 “기관주의” 처분합니다.